

어린이놀이방 운영세칙

제 정 2007. 06. 12

개 정 2015. 03. 03

제1조(목적)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은 성남아트센터 內 어린이 보육시설을 운영하여 공연관람객에게 공연시간동안 편안한 공연관람을 할 수 있도록 미취학 아동을 보호하는 편의시설로 제공하고자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명칭은 “아이사랑방”이라 하며, 성남아트센터 내에 위치한다. <개정 2015.3.3.>

제3조(업무) 어린이 놀이방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공연관람객의 자녀인 아동에 대한 보호
2. 아동의 건강 및 안전관리
3. 기타 보육 목적달성 업무

제4조(보육대상) 성남아트센터 공연장 관람객의 아동으로 36개월~7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한다.

제5조(보육료) 보육료는 성남아트센터 공연관람객의 편의시설이므로 무료 운영한다.

제6조(보육정원) 어린이 놀이방 보육정원은 시설·환경 등을 고려하여 15명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단, 기존인원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육교사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제7조(보육교사) 어린이 놀이방 보육교사 1인 이상은 보육자격증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8조(간식제공) 어린이 놀이방은 보육시간동안 아동들에게 간단한 간식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사용절차) 어린이 놀이방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티켓 제시 및 사용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한다.

제10조(보육시간)

1. 보육시간은 공연 시간 1시간 전부터 종료 후 30분까지로 한다.
2. 공연시간 연장으로 보육시간을 연장 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육시간



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11조(건강 및 안전관리)

1. 아동의 건강상태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바로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아동이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을 앓고 있을 경우 보호자에게 이용금지를 지시하여야 한다.
3. 보육시설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종합보험(원아에 대한 상해, 보험,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 하여야 한다.
4. 종사자 및 아동에 대한 화재 및 안전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보육기록 등 비치) 보육관리를 위하여 보육일지 및 일일 안전점검표 “별지 제2호 서식”, 월별 교육계획안 “별지 제3호 서식”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청결 및 청소상태) 어린이 놀이방의 질병예방 및 쾌적한 놀이방 운영을 위해 장난감·비품의 살균 소독은 연 2회 이상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7.6.1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놀이방 예약 및 일일 이용 현황

담당자 : (인)

담당자 : (인)

번호	아이이름	나이	부모성함	공연명 / 시간	좌석번호	전화번호	주소	예약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참고사항 :								



[별지 제2호 서식]

놀이방 보육 일지 및 일일 안전점검표			
_____년 _____월 _____일			
출근시간 :		퇴근시간 :	
총인원 : _____명			
연령별구분	남	여	비고
3세 ~ 4세 미만			
4세 ~ 5세 미만			
5세 ~ 6세 미만			
6세 ~ 7세 미만			
7세 이상			
오늘의 간식			
오늘의 비디오			
특이사항			
정리사항	냉장고 전원 확인		
	TV 전원 확인		
	전자레인지 전원 확인		
	장난감 정리 여부		
	책 정리 여부		
	바닥 청소 여부		
	휴지통 정리 여부		
	장난감 세척 및 소독		
건의사항			

확인자: (인)

검수자: (인)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5.3.3.>

교육계획 안

실시 기간 :

주 제 :

쌓기놀이영역	
역할놀이영역	
미술영역	
언어영역	
수·조작영역	
시청각	
기본생활습관	



